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06. 16(목), 13:00 ~ 17:00
- ▣ 장 소 : 여수엑스포역 세미나실
- ▣ 출석위원 : 박경립, 김봉렬, 이재인, 정명섭, 정은우,  
홍성걸, 홍승재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서울 옥천암 마에보살좌상 주변 산신각 건립(2차)	공개
2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 체험민박시설 조성(2차, 재심의)	공개
3	서울 이윽탁 한글영비 주변 묘소 정비	공개
4	과주 용미리 마에이불입상 주변 화장실 건립	공개
5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다세대주택 건립	공개
6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주상복합 건립	공개
7	영광 불갑사 대웅전 주변 템플스테이(백운당) 증·개축	공개
8	여수 진남관 주변 숙박시설 건립	공개
9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재심의)	공개
10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사방사업	공개
11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	공개
12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 화장실 신축	공개
13	태안 동문리 마에삼존불입상 주변 탐방로 및 전망쉼터 조성	공개
14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소백산 자연명상마을 조성(2차)	공개
15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선방 개축	공개
16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2차)	공개
17	고령 장기리 암각화 주변 역사공원 조성	공개

## 【검토사항】

18	밀양 영남루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검토	공개
----	---------------------------	----

19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대상 여부 검토	공개
<b>【보고사항】</b>		
20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명륜당 사용(교육장)</li> <li>-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 창고 증축</li> <li>-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창고부지(1부지) 조성</li> <li>-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창고부지(2부지) 조성</li> <li>-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창고부지(3부지) 조성</li> <li>-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당산자연마당 조성사업</li> <li>-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주변 세천정비공사(재심의)</li> <li>-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주변 농업용 가설 창고 설치</li> <li>-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지하수 개발</li> <li>- 창녕 영산 만년교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허가)</li> <li>-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부속창고 증축(재허가)</li> <li>-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 공원 조성(허가사항 변경)</li> <li>-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li> <li>- 남해 용문사 대웅전 주변 명부전 이전</li> <li>-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li> <li>-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 건축물 등 정비공사</li> </ul>	공개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6-06-001

### 1.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주변 산신각 건립(2차)

#### 가. 제안사항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보물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주변에 산신각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산신각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미수립.
- ※ ‘16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5.19) : 부결
  - 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증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옥천암 주지
- (2) 대상문화재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8
  - 지정일 : 2014. 03. 1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7m

○ 사업내용 : 산신각 건립

구 분	1차	2차(금차)
건축면적 (연면적)	20.79m <sup>2</sup> (20.79m <sup>2</sup> )	11.70m <sup>2</sup> (11.70m <sup>2</sup> )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좌동
지붕	맞배지붕	좌동
층수, 높이	1층, 5.6m	1층, 5.55m
기타	3단 석축 및 계단 설치	1단 석축 및 계단 설치

## 라. 의결사항

○ 부결

- 원래 고증에 맞는 향 배치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부결 6명

## 2.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 체험민박시설 조성(2차, 재심의)

### 가. 제안사항

전남 진도군 소재 보물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에 체험민박시설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체험민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11.19)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 ‘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5.19)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진도군수
- (2) 대상문화재 :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 소재지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356-2
  - 지정일 : 1971.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산94-12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324m

○ 사업내용 : 체험민박시설 조성(민박동 3동)

구분	1차('15.11)	2차(금차)
건축면적 (연면적)	333.36m <sup>2</sup> (330.51m <sup>2</sup> ) * 민박A : 60.93m <sup>2</sup> , 민박B,C : 31.59m <sup>2</sup> , 비닐하우스D : 206.40m <sup>2</sup>	126.96m <sup>2</sup> (124.11m <sup>2</sup> ) * 민박A : 60.93m <sup>2</sup> , 민박B,C : 31.59m <sup>2</sup>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A), 경량철골조(B,C), 파이프구조(비닐하우스D)	철근콘크리트조(A), 경량철골조(B,C)
층수 / 높이	지상 1층 / 4.05m(A), 4.15m(B,C), 4.5m(D)	지상 1층 / 4.05m(A), 4.15m(B,C)
기타	도로 및 주차장 조성	도로 및 주차장 조성

#### 라. 현지조사의견(2016.06.07)

- 신청건물의 지반 높이를 기존 가옥의 지반고 이하로 조정하고, 절성토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 조성부지 위쪽으로 건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가결 6명

### 3. 서울 이유타 한글영비 주변 묘소 정비

#### 가. 제안사항

서울 노원구 소재 보물 「서울 이유타 한글영비」 주변 묘소를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묘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이유타 한글영비
  - 소재지 : 서울 노원구 하계1동 12
  - 지정일 : 2007. 09. 1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노원구 하계1동 1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내
  - 사업내용 : 묘소 정비
    - 봉분 정비
      - 둘레석(H=60cm) 설치
      - 성토 및 잔디 식재
    - 활개 정비
      - 활개 하부 석재(H=60cm, L=100cm, T=30cm) 설치
      - 성토 및 잔디 식재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다하지 않게 정비 방안으로 조정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가결 6명

## 4.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화장실 건립

###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에 화장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용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9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51-10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9m
  - 사업내용 : 화장실 건립
    - 기존 화장실
      - 내부 리모델링(24.75㎡, 남성용 화장실)
    - 화장실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28.08㎡(28.08㎡)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지붕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5.25m

- 자연석 석축 쌓기
- H=0~2.4m, L=17.75m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보류 7명

## 5.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다세대주택 건립

### 가. 제안사항

경기 안양시 소재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다세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1-16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 접함
  - 사업내용 : 다세대주택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218.59㎡(620.49㎡)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5층 / 16.8m

##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 6.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주상복합 건립

### 가. 제안사항

경기 안양시 소재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에 주상복합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상복합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다만,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17인
- (2) 대상문화재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2-10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36m
  - 사업내용 : 주상복합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436.45㎡(4,845.195㎡)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하 2층, 지상 10층 / 32.8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 7. 영광 불갑사 대웅전 주변 템플스테이(백운당) 증·개축

### 가. 제안사항

전남 영광군 소재 보물 「영광 불갑사 대웅전」 주변에 템플스테이(백운당) 증·개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템플스테이(백운당)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문화재 보호구역 내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불갑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영광 불갑사 대웅전
  - 소재지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불갑사
  - 지정일 : 1985.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백운당) 증·개축
    - 기존 템플스테이(백운당, 95.40㎡) 해체
    - 템플스테이(백운당) 증·개축
      - 건축면적(연면적) : 152.91㎡(152.91㎡)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6.436m



- 기타
  - 기존 석축 해체(H=1.1m, L=39m)
  - 지반 성토, 석축 설치(H=1.1m, L=12m)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보류 6명, 조건부가결 1명

## 8. 여수 진남관 주변 숙박시설 건립

###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국보 「여수 진남관」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최고높이 17m(경사지붕:21m)” 및 제6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다만,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2인
- (2) 대상문화재 : 여수 진남관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군자동 472
  - 지정일 : 2001. 04. 1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중앙동 267 외 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여수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보호구역에서 172m
  - 사업내용 : 숙박시설(관광호텔)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382.22㎡(2,236.58㎡)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8층 / 34.2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 9.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재심의)

###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보물 「구미 도리사 석탑」주변에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조형물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5.19)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구미시장
- (2) 대상문화재 : 구미 도리사 석탑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
  - 지정일 : 1968. 12. 1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신라불교 역사문화체험숲길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 430m 내외
  - 사업내용 : 부조 조형물 설치 4개소, 종합안내판 1개소, 해설안내판 3개소, 방향이정표 5개소, 평상 1개소

**라. 현지조사의견(2016.05.20)**

- 부조조형물은 규모가 커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를 축소하고, 석탑·사적비 등에서 최대한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 10.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사방사업

###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보물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에 사방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사방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의성 고운사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5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산222, 산218-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350m 이격
  - 사업내용 : 사방댐 2개소, 골막이 1개소
    - 골막이 : 좌안 H=1.5m L=10m, H=1m, L=45m, 우안 H=2m, L=5m, H=1m, L=55m  
바닥막이 H=1m, L=2m, 기슭막이(메쌓기) H=1.2m, L=10m
    - 사방댐 1 : W=21m, L=12.45m, 기슭막이(메쌓기) H=2m, L=15m  
양안 H=1.5m, L=30m, H=2m, L=6m, 메쉬웬스(H=1.2m, W=2m) 10경간
    - 사방댐 2 : W=21m L=14.2m 메쉬웬스(H=1.2m W=2m) 10경간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 11.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보물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 (2) 대상문화재 :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산17
  - 지정일 : 1989. 04. 1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38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0m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63.35㎡(63.35㎡)
    - 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5.3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 12.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 화장실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북 김천시 소재 보물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청암사 수도암 주지
- (2) 대상문화재 :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513 청암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513-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70m가량
  - 사업내용 : 화장실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20.79㎡(20.79㎡)
    - 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4.56m
    - 용도 : 공중화장실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면 등 조정 필요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 13.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주변 탐방로 및 전망쉼터 조성

#### 가. 제안사항

충남 태안군 소재 국보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주변에 탐방로 및 전망쉼터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탐방로 및 전망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태안군수
- (2) 대상문화재 :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 소재지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5
  - 지정일 : 2004. 08. 3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17-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105m ~ 280m 이격

- 사업내용 : 탐방로 및 전망쉼터 조성

구분	봉수대 주변	군부대 주변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석포장 100m<sup>2</sup></li> <li>○편의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게시설 설치: 등 의자 6개소, 피크닉 테이블 2개소</li> <li>-안내판 교체 및 이설 3개소</li> </ul> </li> <li>○탐방로 정비 : 목재울타리 설치 L=40m</li> <li>○성곽주변 잡목제거 1,600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망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 전망쉼터 : 165m<sup>2</sup></li> <li>-제2 전망쉼터 : 100m<sup>2</sup></li> </ul> </li> <li>○탐방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1.5m, L=320m</li> </ul> </li> <li>○성곽주변 잡목제거 : 9,010m<sup>2</sup></li> </ul>

#### 라.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의견

- 봉수대 주변 : 설계원안대로 사업 시행하되, 봉수대 앞 건물기단은 시멘트 구조물로 보아 후대 건물 흔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조물을 제거 하여 원래지반을 찾아 정비가 필요함
  - 군부대 주변 : 설계원안대로 시행해도 무방함
- ※ 충청남도 문화재과-6770호(2016.06.03.)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가결 6명

## 14.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소백산 자연명상마을 조성(2차)

###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주변에 소백산 자연명상마을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소백산 자연명상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12.16) : 조건부가결
  - 무량선원 건립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므로 금회 사업에서 제외
  - 하선원 개축, 봉황선 리모델링은 원안가결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석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5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90m 이격
  - 사업내용 : 소백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 건축면적(연면적) : 344.25㎡(462.75㎡)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 / 9.3m
- 용도 : 선방, 강당, 다도실 등

## 라. 의결사항

###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형을 고려한 배수관계 및 선방의 개방성 등 조정

###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 15.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선방 개축

###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보물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에 선방을 개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선방을 개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아산 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1-1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3-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80m 이격
  - 사업내용 : 선방 개축
    - 건축면적(연면적) : 105.44㎡(105.44㎡)
    - 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6.1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 16.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2차)

### 가. 제안사항

대구 달성군 소재 보물 「달성 현풍 석빙고」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 및 제5구역 “시도지정문화재(현풍향교 대성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에 해당됨.
- ※ ‘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5.19) : 부결
  - 진동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우려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시장
- (2) 대상문화재 : 달성 현풍 석빙고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리 632
  - 지정일 : 1980. 09. 1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상리 701 일원(현풍 천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30m ~ 270m 이격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 L=355m, B=17m(4차로), 노면높이 33.13m(현재보다 0.56m 증가)
    - \* 달성 현풍 석빙고 지반고 : 31.82m

- 문화재보존계획
  - 시공방법 : precast con'c(중단계획고 하향), 공사 시 무진동 파쇄공법 적용
  - 도시계획도로 예정 폭 : 30m → 도시계획도로 계획 폭 : 17m
  - 설계속도 하향 조정 : 60km → 50km
- 공사 시 진동저감대책
  - 무진동 암파쇄(겔파쇄) 공법 적용 : 진동값 최대 0.064cm/sec(진동허용기준 0.2cm/sec)
  - \* 진동수치가 0.05cm/sec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기준수치 이상 계측 시 공사 중지 및 대책 마련

##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보류 6명

## 17. 고령 장거리 암각화 주변 역사공원 조성

### 가. 제안사항

경북 고령군 소재 보물 「고령 장거리 암각화」주변에 관광자원화를 위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령군수
- (2) 대상문화재 : 고령 장거리 암각화
  - 소재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장거리 532
  - 지정일 : 1976. 08. 06.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장거리 534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과 접함
  - 사업내용 : 암각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역사공원 조성
    - 화장실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59.34m<sup>2</sup>(59.34m<sup>2</sup>)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4.5m

- 주차장 조성 : 562m<sup>2</sup>
- 편의시설 설치 : 파고라, 등 의자 등 27개소, 관람데크 213.5m<sup>2</sup> 등
- 조형물 설치
  - 갤러리가벽 H=2m L=48.5m / 가벽 H=2m L=36m 등
  - 암각화 W=1.5m ~ 2m 9개소
  - 문주(열주형) 0.4m × 0.4m × 2.7m 2개소
- 안내판 설치 : 암각화설명판, 종합안내판, 문화재해설판 각 1개소
- 수목식재 : 반송, 스트로잣나무, 마가목, 배롱나무, 벽오동, 이팝나무, 판배나무, 회화나무 등 68주

##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6명, 원안가결 1명

##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6-06-018

### 18. 밀양 영남루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보물 「밀양 영남루」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인접 토지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밀양시장
- (2) 대상문화재 : 밀양 영남루
  -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일원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 기존 보호구역 :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일원 9,433㎡
  - 변경 보호구역 :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일원 13,853㎡(4,420㎡ 증가)
- (4) 신청사유
  - 밀양 영남루 주변의 미정비된 건축물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영남루 주변 능선의 원지형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보호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이를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 라. 지방자치단체(밀양시) 의견

- 신청 부지는 기존 보호구역과 영남루 주차장 사이에 위치하며 3,4층의 상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영남루 주변의 역사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고 있음.

- 영남루의 주변 정비를 위해서는 노후된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원지형을 복원하는 것이 타당함.

#### **마. 현지조사의견(2016.06.09)**

- 신청부지는 현재 근대에 들어선 건물로 인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 신청 부지는 영남루와 읍성의 인접지역으로 영남루의 지형 회복과 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보호구역으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밀양 영남루」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부번	지목	지적 면적 (㎡)	보호 구역 (㎡)	소유자	비고
1	내일동	83	2	체	258	258	국	추가 지정
2	내일동	80	7	도	138	138	밀양시	추가 지정
3	내일동	70		대	1,916	1,916	밀양시	추가 지정
4	내일동	71	8	도	36	36	밀양시	추가 지정
5	내일동	79	1	도	17	17	밀양시	추가 지정
6	내일동	648	15	도	1,616	383	국	추가 지정
7	내일동	70	2	도	32	32	밀양시	추가 지정
8	내일동	72	1	대	122	122	밀양시	추가 지정
9	내일동	68	1	대	169	169	○○○ 외 5	추가 지정
10	내일동	67	3	대	3	3	○○○	추가 지정
11	내일동	67	1	대	729	729	○○○	추가 지정
12	내일동	50		대	1,909	617	밀양시	추가 지정
합계					6,945	4,420		



## 19.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역사문화환경

### 보존지역의 보호 대상 여부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남 밀양시 소재 보물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인지를 검토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 나. 제안사유

-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인지를 검토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쟁점사항
  - 본 문화재가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인지 여부

####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내산면 남명리 산 1-7번지 천황사
- 지정일 : 1995. 01. 10.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

(2) 석불 매매 개요

- 매도인 : ○○○(밀양 천황사 주지)
- 매수인 : ○○○(사천 백천사 주지)
- 매매사유 : 천황사 경매에 따른 불상 매각
- 추진경과 : 매매계약 체결(2016.01.18)

「문화재보호법」 제40조(신고 사항)에 따른 소유권변경신고(2016.02.22.)

**라. 관리현황**

-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6호(2008.12.17.)
  -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정구역 정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고시
    - 밀양 천황사 석조여래좌상 보호구역 정정(산95-6, 지정면적 1구 → 1-7, 산95-2, 지정면적 144.2㎡)
- 관련근거[문화재보호법]
  - 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한다.
  - 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별표 2]

구 분	지 정 기 준
5. 보호물	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석비(石碑)·불상 등은 종각(鍾閣)·비각(碑閣)·불각(佛閣) 다. 그 밖의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6.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마. 법률자문결과[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여부]

##### ○ 법무법인(유한) 주원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석조건축물은 ‘석굴, 석탑, 전탑, 석종, 비갈’ 등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임을 말하고, 판례(부산고법 2011. 9. 28. 2009나18816)에서 사찰의 불상은 동산으로써 선의취득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만을 보면 동산문화재에 해당된다고 판단

##### ○ 정부법무공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는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의 보물 지정,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고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유형문화재의 형태(건조물인지 조각인지 여부)를 따로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동산(조각)인지 건조물인지 여부를 구별할 큰 실익이 없다고 보여짐(**대법원 판례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보물을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 이에 따라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6, 167호로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은 그 필요성이 있는 이상 효력이 있음.

- 문언적인 의미로 ‘건조물’은 ‘지붕이 있고 담 또는 기둥으로 지지되어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것’(네이버 국어사전)이므로 이 사건 문화재는 ‘조각’에 해당하고 건조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동산문화재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 ○ 삼보종합법률사무소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동산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민법 제99조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및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민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분류하는 이유는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특별한 취급을 할 사회적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이고, 문화재보호법은 동산과 부동산을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와 같은 분류를 통해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문화재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이 사건 문화재를 장소적으로 보존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화재는 건조물 문화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바. 행정사항

- 본 석불이 동산 문화재라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해제하고자 함.

#### 사. 의결사항

- 부결
  - 동산, 부동산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장소성이 증시되는 본 석불은 기존과 같이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6-06-020

**2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 중구 소재 보물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명륜당 사용(교육장) 현상 변경 등 허가신청 16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6건	허가 11건 변경허가 2건 조건부허가 3건	
서울 문묘 및 성균관	서울 중구 (○○○)	<input type="checkbox"/> 명륜당 사용(교육장) ○ 인성교육 등('16.06.11. 10시~17시) * 교육에 따른 물품 및 집기, 전기 및 인화 물질 반입과 사용 없음	허가	'16.06.02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전남 강진 (○○○)	<input type="checkbox"/> 창고 증축 ○ 위치 :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781-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93m 이격) * 기존건축물 : 단독주택 68.31㎡ ○ 건축면적(연면적) : 23.1㎡ (23.1㎡) ○ 건축구조 : 시멘트블럭조 ○ 층수 및 높이 : 1층, 3.4m	허가	'16.06.02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경기 파주 (○○○ 외 2인)	<input type="checkbox"/> 창고부지(1부지) 조성 ○ 위치 :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70-1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436m 이격) ○ 사업면적 : 4,094㎡ ○ 절토높이 : 약13.8m ○ 옹벽 설치 - A01 : H=0~2.5m, L=24m(보강토옹벽) ※ H=1m~2.5, L=73m(기존L형옹벽)	허가	'16.06.02
	경기 파주 (○○○)	<input type="checkbox"/> 창고부지(2부지) 조성 ○ 위치 :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70-1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384m 이격) ○ 사업면적 : 4,379㎡ ○ 절토높이 : 약13.8m ○ 옹벽 설치 - A01 : H=0~3.5m, L=34m(보강토옹벽) - A02 : H=2.5~3.5m, L=37m(보강토옹벽) - A03 : H=0~2.5m, L=80m(보강토옹벽) - A04 : H=0~1.5m, L=13m(L형옹벽)	허가	'16.06.02
	경기 파주 ((주)쑈노)	<input type="checkbox"/> 창고부지(3부지) 조성 ○ 위치 :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70 일원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354m 이격) ○ 사업면적 : 4,438㎡ ○ 절토높이 : 약8.7m ○ 옹벽 설치 - A01 : H=3.8m, L=110m(보강토옹벽) - A02 : H=0~2.5m, L=21m(L형옹벽) - A03 : H=0~3.8m, L=46m(L형옹벽) - A04 : H=3.8m, L=68m(L형옹벽) - A05 : H=0~3m, L=36m(보강토옹벽) - A06 : H=2~2.5m, L=47.5m(L형옹벽) ※ H=1m~2.5, L=50m(기존L형옹벽)	허가	'16.06.02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충북 청주 (청주시장)	<input type="checkbox"/> 당산자연마당 조성사업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09-4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350m 이격) ○ 수목식재 - 교목, 관목, 지피 식재 ※당산토성 예상지 관목 및 지피만 식재 ○ 포장 - 야자매트 포장(1,184㎡) - 마사토 포장(204㎡) ※당산토성 예상지 야자매트 포장 ○ 관리시설 리모델링 ○ 안전난간 설치(15m, 마사토 포장구역)	허가	'16.06.15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충북 영동 (영동군수)	<input type="checkbox"/> 세천정비공사(재심의) ○ 위치 :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96 일원 * 보호구역내 및 제1구역 ○ 조경석쌓기 - H=0.5~3.0m, L=16m ○ 배수관 설치 - 측구수로관 : 12m, 집수정 1개소 ※ 자연석 계단설치 사업 삭제	허가	'16.06.15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경북 구미 (○○○)	<input type="checkbox"/> 농업용 가설 창고 설치 ○ 위치 :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529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85m 이격) ○ 사업내용 - 면적 : 18㎡ - 구조 :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 - 높이 : 2.6M	허가	'16.06.15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경북 칠곡 (○○○)	<input type="checkbox"/> 지하수 개발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58-5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325m 이격) ○ 사업내용 - 관정 매설 : 굴착150m, 150mm	허가	'16.06.1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창녕 영산 만년교	경남 창녕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재허가) ○ 위치 : 창녕군 영산면 동리 271-14 * 제2구역(문화재에서 42m 이격) - 건축면적 : 118.8㎡ - 연 면 적 : 237.6㎡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 / 8.1m	재허가	'16.06.15
철곡 송림사 오층전탑	경북 철곡 (○○○)	<input type="checkbox"/> 부속창고 증축(재허가) ○ 위치 : 철곡군 동명면 구덕리 88-11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100m) - 건축면적 : 68.36㎡ - 연면적 : 68.36㎡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 4.4m	재허가	'16.06.15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충남 아산 (아산시장)	<input type="checkbox"/> 공원 조성(허가사항 변경) ○ 위치 : 아산시 읍내동 255-5 * 보호구역 내 ○ 기허가사항 -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조경공사 등 ○ 금회 추가사항 - 측면 석축 설치, 우수맨홀설치 추가	변경허가	'16.06.03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경북 성주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 위치 :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산3-15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43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157.17㎡(162.69㎡)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층수/높이 : 지상2층 6.7m - 변경내용 : 건물위치 1.2m 이동	변경허가	'16.06.1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남해 용문사 대웅전	경남 남해 (용문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명부전 이전 ○ 위치 : 남해군 이동면 용문사길 166-11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명부전 위치 이전 2M - 이전사유 : 명부전 처마의 낙숫물이 대웅전에 튀어 보물의 피해 우려	조건부허가 (도지정문 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검토하여 시행)	'16.06.03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영천 (한광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위치 :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500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방재시설 설치 : 카메라설치 20개소, 감지기설치 8개소 - 관로공사 : 터파기 깊이 0.8m, 폭0.8m - 폴대설치 : 3개소(H=3M)	조건부허가 (터파기 시 매장문화재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16.06.15
예천 용문사 대장전	경북 예천 (용문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대장전 주변 건축물 등 정비공사 ○ 위치 :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보광명전 기단 해체보수(장대석→ 판석 세우기) - 범종각 기단 해체보수(장대석→장대석) - 자운루 주변 조경수 식재(소나무, 산단풍, 청단풍, 진달래, 산철쭉 등)	조건부허가 (매장문화 재 유존지역 내 공사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16.06.15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접수 7명